

# 대한치과의료관리학회 정관

2013. 개정

2015. 개정

2019. 개정

## 제 1 장 총 칙

제 1 조 본회는 대한치과의료관리학회 (이하 영문표기로는 Korean Academy of Dental Administration 이라 하며 약자로는 'KADA')라 칭한다.

제 2 조 본회는 변화하는 치의학을 사회계층 전반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방안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치과의료관리의 학문적 발전과 회원 상호 간의 교류확대 및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 조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.

1. 학술 연구 : 학술집담회 및 종합학술대회, 학회지 발간
2. 해외 학계와의 학술교류
3. 치과의료실태조사
4. 치과의료의 질, 치과의료경영, 치과의료자원, 치과의료정책, 치과의료정보
5. 치과병원 인증 관련 업무 및 기타 사업

## 제 2 장 회 원

제 4 조(회원) 본 학회는 정회원, 준회원, 명예회원 및 법인회원으로 구성한다.

제 5 조(회원의 자격) 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치과의료관리에 관심이 있는 자

1. 정회원(member)은 대한민국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로 한다.
2. 준회원(affiliated member)은 치과 관련 교육기관의 대학교나 대학원 과정에 있거나 수료한 자(외국인 포함)로 한다.
3. 명예회원(honorary member)은 본 회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로 회원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 받은자로 한다.
4. 법인회원(corporate member)은 본 학회에 가입원하는 치과 의원 과 병원 등 단체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기관으로 한다.

제 6 조(가입) 본 학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본 학회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임원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 소정의 입회금 및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입회금과 연회비는 이사회에 의해 금액 및 납부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

제 7 조(회원의 의무와 권리) 본 학회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
1. 모든 회원은 본 모임의 사업과 회의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.
2. 정회원만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.
3. 회원은 회칙,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 및 부담금 납부의 의무를 갖는다.
4. 회원이 제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회원들의 의결과 승인으로 징계할 수 있다.

제 8 조(기타) 본회는 고문 및 명예회장을 둘 수 있으며, 회원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9 조(회원자격의 상실)

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회원은 회원자격을 상실한다.

가. 회원의 사망

나. 회원인 자가 학회의 탈퇴를 원하는 경우

다. 회원의 비윤리적 행위

② 제1항 다호의 경우, 본 학회 이사 전원을 위원으로 하는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2/3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회원자격을 박탈한다.

제 3 장 임 원

제 10 조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

1.고문 약간명

2.회장 1명

3.수석 부회장 포함 부회장 0명

4.총무이사 0명, 학술이사 0명, 편집이사 0명, 연구이사 0명, 기획이사 0명, 재무이사 0명, 섭외이사 0명 및 감사 1명 등.

제 11 조 회장은 총회에서 선임하고 부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회장이 선임하며 선출된 임원은 이사 자격을 보유한다. 회장 임기는 2년이며 총회 의결로 재임가능하다.

제 12 조 회장은 회원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하고 제반회의의 의장이 된다.

제 13 조 부회장 중 1인을 수석 부회장으로 이사회 결의로 선출하고, 회장 부재시 차기 회장으로 서의 역할을 부여한다.

제 14 조 이사는 제반업무를 결의한다.

제 15 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단,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 잔임기간으로 한다.

#### 제 4 장 회의

제 16 조 총회는 제 5조에 규정된 회원으로 완성한다.

제 17 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되 정기총회는 매년1회 개최한다. 임시 총회는 회원들의 요청에 의하며 회장이 소집한다.

제 18 조 총회를 포함한 모든 의결은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수결에 의해 의결한다. 이사회는 사안에 따라 소집되며 회장인 주관한다.

제 19 조 아래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.

1.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
2. 사업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
3.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

#### 제 5 장 재정

제 20 조 본회 재원은 회원들의 입회금 회비, 협회 등 유관단체로 부터의 지원금 과 기타 비영리 사업 잉여금등의 수입으로 하고 각 회비는 회원들의 의결로 전한다.

제 21 조 본회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부칙, 본회칙 이외의 사항은 관례에 의거한다.

#### 제6장 부칙

제 22 조 본 회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세칙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칙에 준한다.

제 23 조 본회는 총회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득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긴급 이사회를 통하여 안건을 심의 후 시행하며 차기 총회에서 승인한다.